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4,850,807	14,545,524
일반회계		433,017,830	12,990,535
특별회계		51,832,977	1,554,989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51,832,977	1,554,98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88,837	29,665
	주차장특별회계	350,000	10,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9,734	5,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62,000	586,8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47,840	10,435
	치수사업특별회계	404,566	12,13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000,000	90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885,498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